

의안번호	2211159
의 퇴 인	김재원의원
회 답 일	2025. 7. 17.
추 계 번호	25C3028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의무 구비 대상시설에 경찰차를 추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59억 9,700만원, 2029년 34억 7,3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194억 4,900만원으로 추계됨
 -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량 1대 당 1개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을 가정한 추계결과로서,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(안 제47조의2)	15,976	-	-	3,473	-	19,449	3,890

주: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7조의2 (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	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함(제1항) 2의2.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「도로교통법」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이 운용하는 경찰차 ※ 국가는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6조제2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7조의2 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	○	○ 기시행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본 추계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응급장비 설치에 대한 기시행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함

- 동법 제16조제2항¹⁾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
 - 보건복지부는 2025년 ‘응급처치 활성화 지원’ 사업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8억 2,200만원(국비보조율 50%)의 예산을 편성
- 현행 법령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종류 및 개수 등 구비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본 추계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로 자동심장충격기만을 고려함
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의 종류 및 개수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
□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1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재정지원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신규 설치 자동심장충격기 수)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「도로교통법」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이 운용하는 경찰차의 수는 총 6,946대이므로, 1대 당 자동심장충격기 1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운용중인 경찰차 총 6,946대 중 순찰차 5,886대와 사고조사차 399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1개씩 설치
 - 추계기간 동안 경찰차의 수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(구비 단가) 조달청 나라장터와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자동심장충격기는 230만원,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²⁾은 50만원으로 가정하여 추계³⁾
 - 추계 첫 해인 2026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, 소모품은 설치 후 3년 주기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 결과,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1억 5,400만원, 2029년 11억 2,1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62억 7,5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(안 제47조의2)	15,976	-	-	3,473	-	19,449	3,890

주: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은 배터리와 패드 등임

3) 자동심장충격기는 업체와 모델마다 가격이 상이하나, 본 추계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자동심장충격기 가격이 200~240만원(보관함 포함)인 점과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 상 자동심장충격기 단가가 250만원인 점을 고려함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박선아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741	sunapark@assembly.go.kr